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 대한 법제 연구

## -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고재종\*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존재 여부
  - 1. 서 설
  - 2. 지역개발법인
  - 3. 시·도 경제협의회
  - 4. 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협의회
  - 5. 상권활성화재단
  - 6. 소 결
- III.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 1. 서 설
  - 2.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설립
  - 3.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업무
  - 4. 소 결
- IV.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도입에 대한 검토
  -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도입 필요
  - 2. 동 기구의 지원 대상 사업자 등의 확대
  - 3. 지원대상의 업무 확대 필요
  - 4. 지원의 방법으로 펀드의 운용
- V. 맺는 말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접수일자 : 2014. 11. 30. / 심사일자 : 2014. 12. 10. / 게재확정일자 : 2014. 12. 10.

## I. 들어가는 말

새로이 출범한 현재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은 2014년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새 경제팀은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점, ② 최근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③ 과도한 가계부채, 낙후된 서비스 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④ 현 상황 지속시 우리 경제는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sup>1)</sup> 즉, ‘새 경제팀’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하여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sup>2)</sup>

그 중 내수활성화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와 소득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 조건으로 지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구조의 질적 변화를 통해 지역 간의 소득 증대 및 경제 격차를 줄여야 하며, 둘째, 주체적 조건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활동이 필요하며, 셋째, 제도적 조건으로 주체적 조건과 객체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율적

1) 관계부처 합동,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2014. 7. 24,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40724101810132.pdf](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40724101810132.pdf)(2014. 11. 10), 1-3쪽.

2) 관계부처 합동, 위의 자료, 6쪽.

3) 정부는 ‘지역창조경제’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지역 내 경제적, 비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하며, 일련의 경험을 학습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 전반의 경제적 자생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말한다. 결국 이 개념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유리·김정연·공영일·진홍윤·허유민,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11, 61쪽].

4) 권성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일반대학원, 2002, 10쪽.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규범, 경제제도 및 행정제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sup>5)</sup>

이에 본 논문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조건 중 세 번째의 제도적 조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법(株式會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존재하는지, 유사 기구가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선 방안 내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존재 여부

### 1. 서 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이 중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sup>7)</sup>」에 근거를 둔 시·도경제협의회가 있고, 기타 지역의 상권활성화 재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에는 이 기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이광시,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대학원, 2002, 11-12쪽; 또한 지역활성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간 동반성장으로 국가 공간 전략의 재정립, ② 지방의 자발적 역량 강화, ③ 지역활성화 정책의 목표를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창업촉진,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에 두어야 하며, ④ 지역개발기구와 같은 체계적 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송영필,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5. 4. 1, 44-52쪽].

6) 나채준,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13, 23쪽.

7) 동 규정은 기획재정부 주관하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506#0000\(2014. 11. 11\)](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506#0000(2014. 11. 11))].

## 2. 지역개발법인

### (1) 개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개발법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법률 제30조 제1항).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 (2) 지역개발법인의 설립 및 활용 방안

지역개발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정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으로서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간주한다. 다만, 동 법인은 민자유치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사업의 종료시까지 존속되는 한시법인으로 설치되도록 하였다.

동 법인의 설립 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과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의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동 법인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에 시범 적용한 다음 개발촉진지구,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관광휴양거점 개발사업 등으로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sup>8)</sup>

## 3. 시·도 경제협의회

### (1) 설치 근거 및 목적

시·도 경제협의회에 대해서는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에 그 근거를

---

8) 국토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의 설립과 추진방안”, 「국토정책」제131호, 2007. 3. 12, 2-3쪽.

두고 있다. 동 규정은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동 규정 제1조). 나아가,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동 규정 제9조).

## (2) 기능

시·도 경제협의회는 ①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다(동 규정 제2조). 관련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협의회

### 1) 설치 근거 및 목적

동 협의회는 시·도 경제협의회 제9조(지역경제 협의회 설치)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 조례의 목적은 위의 시·도 경제협의회 목적(동 규정 제9조)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 제1조).

## 2) 기능

동 협의회는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③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④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⑤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⑥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⑦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동 조례 제2조).

## 3) 회의 개최 절차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동 조례 제6조). 위원장의 선임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동 조례 제3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동 조례 제8조). 나아가,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 조례 제9조).

협의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 조례 제10조).

## 4. 상권활성화재단

### (1) 설립 근거 및 목적

동 재단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마련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창원시의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동 재단의 설립 목적으로는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 기구로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응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 조례 제1조).<sup>10)</sup>

### (2) 기본방향 및 재단의 사업

동 조례에 의하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①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②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③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④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 조례 제2조).

이에 따라 재단은 ①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② 공동시설·고객편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③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④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⑤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⑥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⑦ 상권활성화 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⑧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

9) [http://www.google.co.kr/url?url=http://council.changwon.go.kr/council\\_standing/active/down.php%3Fbill\\_no%3D618%26nox%3D1&rct=j&frm=1&q=&esrc=s&sa=U&ei=xnxhVMnwNcHAmAXZjICoBw&ved=0CBMQFjAA&usg=AFQjCNFvMou8VHz3GRCibRld24BkTgxw](http://www.google.co.kr/url?url=http://council.changwon.go.kr/council_standing/active/down.php%3Fbill_no%3D618%26nox%3D1&rct=j&frm=1&q=&esrc=s&sa=U&ei=xnxhVMnwNcHAmAXZjICoBw&ved=0CBMQFjAA&usg=AFQjCNFvMou8VHz3GRCibRld24BkTgxw)(2014. 11. 11).

10) 위의 사이트.



탁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례 제5조).

## 5.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개발법인의 경우 그 형태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종료시까지 존속되는 한시적 법인에 불과하였다. 그 사업의 내용도 주로 지역의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시·도 경제협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동 협의회가 비록 주요시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기업 등과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기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식적·간접적 지원 기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서 언급된 상권활성화기구도 특정 지역 내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을 뿐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를 두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 기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 Ⅲ.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 1. 서 설

일본은 2007년말 2008년 가을 이후 전 세계 금융 경제 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차세대 선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 맞추어 기업유치, 사회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산업 구조의 특색에 입각한 중장기 산업진흥책의 수립·종합적인 지역 전략의 구비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sup>11)</sup>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주식회사 기업 재생 지원기구법(株式會社企業再生支援機構法)에 근거한 2009년 6월 기업재생지원기구(企業再生支援機構, 이하 구기구라고 함)를 설립하여<sup>12)</sup> 동년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sup>13)</sup> 그런데 동 기구의 관련법은 이후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기구법(이하 ‘활성화법’이라고 함)」<sup>14)</sup>으로 개정되면서 동 기구도 2013년 3월 18일 상호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기구(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 이하 신 기구라 함)<sup>15)</sup>로 명칭을 변경하였다.<sup>16)</sup> 이러한 상호 변경으로 종전 업무

- 
- 11) 미국은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대 말부터 법제 정비가 있었다. 즉, 1989년 제정된 금융기관개혁 경쟁 및 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을 비롯한 많은 입법을 하였다. 최근에는 2008년 경제활성화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ESA) 및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 및 2009년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이 제정되기도 하였다[Sarah K. Bryant and Spiros H. Martzoukos, “the Impac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n the Value of S&L Stocks”,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22. Number 2-3, Summer/Fall 1998, pp. 68-69;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Description of the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Jan 30, 2008; Joseph E. Aldy, “A Preliminary Review of 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s Clean Energy Package”, *the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Harvard Kennedy School, Dec. 2011 참조; 나아가, 이런 절차를 통하여 형성된 기금의 집행은 주나 기초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기금의 사용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구로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가 설립되고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에게 각종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이에 대해서는 법제처,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 법제연구원, 2009. 9. 30 참조).
- 12) 명칭은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REVIC), 설립 연월일은 2009년 10월 14일이며, 동 회사의 출자 자본금은 정부와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였다[<http://www5.cao.go.jp/revic/pdf/gaiyou1.pdf>(2014. 11. 15)].
- 13)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5.html>(2014. 11. 15).
- 14) 「주식회사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은 「주식회사 기업 재생 지원기구법」을 2009년 6월 26일 법률 제63호로 변경하여 제정된 것이다. 가장 최근의 개정으로는 2014년 6월 27일 법률 제91호로 이루어졌으며, 아직 미시행 상태에 있다 [<http://law.e-gov.go.jp/htmldata/H21/H21HO063.html>(2014. 11. 15)].
-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http://www.revic.co.jp/>(2014. 12. 15)].
- 16) 동 기구의 자본금은 정부 130억엔, 민간금융기관 101억엔으로 총 231억엔에 이르고 있다[內閣府地

범위는 출자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대출채권 등의 신탁인수까지 확대되었다(활성화법 제24조 제1항).<sup>17)</sup>

이처럼 신(新) 기구를 통한 사업의 재생 지원은 채권자·채무자 간의 이해 조정의 원활화<sup>18)</sup>뿐만 아니라, 출자에 의한 리스크 머니의 투입<sup>19)</sup>이나 전문가의 파견에 의한 경영 개선 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나 채권자 등은 그에 수반한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sup>20)</sup>

## 2.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설립

### (1) 동 기구의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목적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경제력의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신용질서의 기반을 강화함에 있다. 특히, 금융기관, 지방공공단체 등과 제휴를 통하여, 비록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유용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타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매수하여 줌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재생시키고, 또한 자금을 공급하는 투

---

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擔當室, “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について”,

<http://www5.cao.go.jp/revic/index.html>(2013. 5); 47NEWS 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が發足 中小企業の再生担う 『共同通信』 2013年3月18日,

<http://www.47news.jp/CN/201303/CN2013031801001199.html>(2014. 11. 15).

17) 2012년 3월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법」이 종료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의 악화 내지 파탄에 빠질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의 종료기간의 연장을 심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舊) 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신(新)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구(舊) 기구에서는 유용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기업에 대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3년 이내의 단기로 사업의 재생을 지원하였지만, 신(新) 기구는 중소기업의 재건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였다[上村未緒, “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 『みずほ研究所政策調査部』, 2013. 5, 13頁].

18) 신기구는 공적·중립적인 제3자로 사적 당사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채권자 사이의 이해 조정 등에 대응이 가능하다[<http://www.revic.co.jp/business/merit.html>(2014. 11. 15)].

19) 기구는 투자 펀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이나 스폰서 등과 제휴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대출채권의 매입이나 사업자에 대한 출자, 용자에 의한 자금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자본금(약 231억엔) 및 차입과 관련한 정부보증(26년도 예산에서 1조엔)을 계획하고 있다.

20) <http://www.revic.co.jp/business/merit.html>(2014. 11. 15).

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 조합원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기타 업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의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활성화법 제1조).<sup>21)22)</sup>

## (2) 동 기구의 명칭 등

이러한 신 기구의 명칭은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법」에 의하고, 동법에 따라 기구는 하나만 설립된다(활성화법 제3조). 또한 신 기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구(預金保險機構)<sup>23)</sup>가 상시 발행하고 있는 주식 총수<sup>24)</sup>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신기구는 모집주식(일본 회사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모집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을 할 때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동 기구는 상호 중에 반드시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동 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중에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이하 그 구체적인 설립 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회사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sup>25)</sup>

---

21) 이와 관련 일본의 산업정책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經濟産業委員會調査室 柿沼重志·中西 信介, “産業競争力強化法案の概要と主な論点”, 『經濟のプリズム』 No. 120, 2013. 11, 12-13頁].

22) <http://law.e-gov.go.jp/htmldata/H21/H21HO063.html>(2014. 11. 15).

23)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파탄금융기관에 관련된 자금결제를 확보하고,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및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금보험법의 목적 달성과 예금보험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https://www.dic.go.jp/>(2014. 12. 15)].

24) 주주총회에 대해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정해진 종류주식을 제외한다.

25) <http://law.e-gov.go.jp/htmldata/H21/H21HO063.html>(2014. 11. 15).

### 3.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업무

#### (1) 서 설

지역경제활성기구의 업무는 활성화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별사업의 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활성화법이 제정되면서 위의 업무 외에도 특정경영관리, 특정신탁인수, 특정 출·용자, 특정 전문가 파견, 특정조합출자 등의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었다(활성화법 제24조).<sup>26)</sup>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 사업재생지원업무

##### 1) 사업재생의 개념

사업 재생이란 유용한 경영 자원을 가지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채무를 정리하는 등 채무의 재구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의 재검토나 재구축에 의해 충분한 사업 이익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sup>27)</sup>

기업이 곤궁에 빠진 요인으로는 ① 본업의 과대투자, ② 신분야, 신지역에의 투자 실패, ③ 사업 다각화의 실패, ④ 시장 환경 변화의 부적합, ⑤ 매니지먼트의 실패, ⑥ 부동산 투자, ⑦ 거래처, 거래은행, 자회사의 파탄 등을 들 수 있다.<sup>28)</sup>

이러한 사업재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① 유용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 ②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 ③ 주요채권자의 연명(連名)에 의하여 신청하였다는 점 등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재생의 전망이 있다고

26) 신법인 활성화법은 구법인 「주식회사 기업재생지원기구법」과 구별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http://www.chiikinogenki.soumu.go.jp/chiiki/files/4.pdf>(2014. 11. 15)].

27) 이는 종래 사업재생 ADR제도를 이용하였다. 사업재생 ADR제도는 민간주체가 사업재생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7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창설된 제도이다. 사업재생의 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자(과잉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과 채권자(주로 금융채권자) 간의 조정을 함에 의하여 기업의 사업재생의 원활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http://www.moj.go.jp/content/000108997.pdf>(2014. 11. 15)].

28) 小野 伸一, “事業再生を考える - 過去の事例から-”, 『経済のプリズム(No. 85)』, 参议院調査室資料, 2010. 11, 19頁; <http://www.mcci.jp/saisei.pdf>(2014. 11. 15).

인정될 것, ④ 재생지원의 결정으로부터 5년 이내 「생산성향상기준」<sup>29)</sup> 및 「재무건전화기준」<sup>30)</sup>을 만족할 것, ⑤ 기구가 채권매입, 자금의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출자 이행의 경우 지원결정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사업자에게 관련 채권 또는 주식 등의 처분이 가능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될 것,<sup>31)</sup> 기구가 출자를 한 경우 필요 불가피성·출자 비율에 따른 거버넌스의 발휘, 스폰서 등의 협조투자 및 회수의 전망 등을 만족할 것, ⑦ 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할 것의 조건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sup>32)</sup>

## 2) 사업재생 지원 대상 사업 및 사업자

사업 재생 지원 대상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 지방 3공사, 제3분야의

- 
- 29) 「생산성향상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당기 순이익율이 2% 포인트 이상 향상,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이 5% 이상 향상,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이 6% 이상 향상, 상기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의 지표의 개선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30) 「재무건전화기준」이라 함은 이자가 있는 부채(자본성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제외)의 캐쉬플로어(cash flow)에 대하여 비율이 10배 이내(캐쉬플로어 = 유보이익+감가상각비+충당금(리스크金)증감), 경상수입이 경상지출을 상회할 것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31) 법 개정 전에는 지원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일본내 실무의 표준적인 사업재생기간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였다  
[<http://www.cas.go.jp/jp/seisaku/fund/dai1/siryou4.pdf>(2014. 11. 15)].
- 32) 관련법으로는 株式会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平成二十一年法律第六十三号), 株式会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施行令(平成二十一年政令第二百三十四号), 株式会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施行規則(平成二十一年內閣府·總務省·財務省·經濟産業省令第一号), 株式会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第二十五條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おそれがある旨の認定の申請手續きに關する命令(平成二十四年内閣府·總務省·財務省·經濟産業省令第一号), 株式会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支援基準(平成二十一年內閣府·總務省·財務省·厚生勞働省·經濟産業省告示第一号), 金融機關等が對象事業者に行おうとする資金の貸付けが当該對象事業者の事業の繼續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の基準を定める件(平成二十一年內閣府·總務省·財務省·經濟産業省告示第一号), 機構がその特定關係者との間で機構の取引の通常の條件に照らして機構に不利益を与える取引又は行爲を行うことについて、主務大臣が必要なものとしてあらかじめ定める場合を定める件(平成二十一年內閣府·總務省·財務省·經濟産業省告示第二号), 事業再生計畫に記載された社債權者集會の決議に基づき行う償還すべき社債の金額についての減額が当該再生支援對象事業者の事業の再生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の基準を定める件(平成二十五年內閣府·總務省·財務省·經濟産業省告示第二号)가 있다.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업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다(활성화법 제25조 제1항). 먼저, 대규모 사업자라 함은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 총액이 5억엔을 초과하거나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사업자를 말한다(활성화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조).<sup>33)</sup> 다음으로 지방 3공사라 함은 지방주택공급공사, 지방도로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를 말한다(동조 제2호). 마지막으로 제3분야의 사업자란 위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1/4 이상을 출자한 법인(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1/4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파견한 직원이 임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③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 위탁비 등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④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자법인(子法人) 등<sup>34)</sup>과 합하여 1/4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1/4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조 2, 3, 4호). 이러한 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활성화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명칭의 공표가 일률적인 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관련 중소기업의 상호를 공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사실상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후에는 원칙상 지원대상 사업자의 명칭을 비공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공표하도록 하였다.<sup>35)</sup>

지원대상의 업종은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각 업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모든 업종이 그 지원 대상이 되고 있으

33) 다만, 재생지원에 의한 사업의 재생을 도모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 총체적 경제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재건, 지역의 신용질서의 유지 또는 고용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http://www.revic.co.jp/business/target.html>(2014. 11. 15)].

34) 「자법인 등」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채무 및 사업의 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체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활성화법 시행령 제1조 제5호).

35) 법 개정 후의 지원실적 5건 중 4건은 지원대상 사업자의 동의 하에 명칭을 공표하였다. 그 이유는 명칭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사업자의 신용훼손을 방지하고, 그 재건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http://www.cas.go.jp/jp/seisaku/fund/dai1/siryou4.pdf>(2014. 11. 15)].

며, 지원 대상 지역 및 회사의 형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지분회사,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모든 형태의 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겠다.<sup>36)</sup>

### 3) 사업재생 지원의 절차

사업재생의 지원을 위해서는 ① 사전 상담, ② 자산 등의 기업실사, ③ 정식의 지원 신청, ④ 재생지원의 결정, ⑤ 비주요 금융기관과의 조정, ⑥ 채권의 매입 결정, ⑦ 출자 결정 및 모니터링, ⑧ 채권의 처분 및 관련 기업의 공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상담으로 사업자나 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과 언제든지 사전 상담 내지 조회를 할 수 있다. 상담을 하는 경우 사업 재생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 개요, 직근 결산서 등 기초자료를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사전 상담의 단계에서 관련 금융기관 등은 기업의 명칭 등 상담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일체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 방법으로 사업자나 금융기관, 스폰서 등 개별 상담을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기타 상담 지역 및 상담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다. 또한 착수금도 없다.<sup>37)</sup>

둘째, 사업 재생 지원에 있어서 자산 등의 기업실사(due diligence)<sup>38)</sup>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산평가서, 청산대차대조표, 손익계획서 및 변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sup>39)</sup>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에 이르렀을 경우, 중소기업은 비용의 1/10을 사업자가 그 나머지는 신기구

36) <http://www.revic.co.jp/business/target.htm>(2014. 11. 15)l.

37) <http://www.mcci.jp/saisei.pdf>(2014. 11. 15).

38) 기업실사란 영업거래 준비 단계에서 한 회사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용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되는데, 통상 M&A에서 기업실사는 인수자가 매도 대상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 부외부채, 환경 문제 등 잠재적인 채무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사를 위해 실사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필요 구성원으로서 재무, 회계, 세무전문가, 법률전문가, 해당 업종 엔지니어, 환경전문가, 산업분석전문가 등이다. 민사법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Jeffrey M. Weiner Partner/Steptoe & Johnson LLP, *Business Du Diligence Strategies* 2010 ed., Thomson Reuters/Aspatore, 2010, p. 6].

39) <http://www.turnaround.jp/adr/guidebook.pdf>(2014. 11. 15).



가 부담하고, 중견기업은 비용의 1/2 혹은 1억엔 중에서 낮은 가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기업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렇지만 지원 결정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구가 원칙으로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sup>40)</sup>

셋째, 위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 다음으로 정식의 지원 신청을 하게 된다(활성화법 제26조). 이 경우 사업 재생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채권자와 사업자가 연명으로 행하게 되므로(동법 제25조 제1항) 사업자와 거래처 금융기관 등과 많은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사업자만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인 서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반면 사업자와 함께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복수의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른바 주요 금융기관은 아니더라도 재생을 주도하는 금융기관 등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식신청을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야 한다.

넷째, 신 기구는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위에서 언급한 재생지원 결정 기준<sup>41)</sup>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재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재생지원이 가부를 결정한다(동법 제28조). 재생결정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지만, 이사회는 판단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속성, 지원의 형태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신 기구가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생지원을 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sup>42)</sup>

다섯째, 위의 재생지원결정과 동시에 신 기구는 주요한 거래 금융기관 등 이외의 비주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 채권을 신 기구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사업재생계획에 동의하여 채권포기 등을 행할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인지, ㉡ 채권을 신 기구에 대하여 매각할 것인지, ㉢

4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다. 대기업은 부채 총액 200억엔을 초과한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에 의하여야 한다.

41) 앞의 (2) 1)을 참조.

42) <http://www.cas.go.jp/jp/seisaku/fund/dai1/siryoku4.pdf>(2014. 11. 15).

사업재생계획에 동의한 채권포기 등을 행한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게 된다(동법 제26조). 나아가, 신 기구에 대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 기구의 매입가격은 재생지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사업재생계획을 전제로 한 적정한 시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동시에 신 기구는 관계 금융기관 등의 대상 사업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행할 경우 그 재생이 곤란하게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출금의 「회수 등 정지 요청」을 하게 된다(동법 제27조).<sup>43)</sup>

여섯째, 위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비주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동의 등을 얻을 수 있었을 경우, 채권 매입 등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한편 채권 매입 등의 신청기간이 만료하기까지 비주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재생에 필요한 채권액을 채우지 못하는 등 재생지원에 필요한 동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 기구는 신속하게 재생지원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의 8).<sup>44)</sup>

일곱째, 신 기구는 매입 결정 등을 한 후, 재생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재생계획에 따른 출자를 행하게 된다. 매입 결정 등을 한 후 신 기구는 사업재생계획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신규자금의 용자·보증 등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sup>45)</sup>

마지막으로 신 기구는 재생지원 대상 사업자에 관련한 채권 또는 주식 등을 지원결정 후 5년 이내에 양도 등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자(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명 등을 공표할 것도 없이 신 기구의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명 등의 공표가 오히려 신용보완을 하는 등 사업재생에 플러스인 것으로 사업자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합의 하에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동법 제34조).<sup>46)</sup>

43) <http://www.mcci.jp/saisei.pdf>(2014. 11. 15).

44) 위의 사이트.

45) 위의 사이트.

46) 위의 사이트.

### (3)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활동지원 업무

#### 1) 시설

2013년 3월 및 동 2014년 9월 27일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에 의하여, 신 기구에 새로운 기능이 부과되었다. 즉, 종전의 기구에서 행하던 사업인 사업재생 지원 업무 이외의 지역의 재생 현장의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 업무를 확대하였다. 즉, ① 특정신탁인수업무, ② 특정출자업무, ③ 특정전문가파견업무, ④ 특정조합출자업무, ⑤ 특정경영관리업무 등의 업무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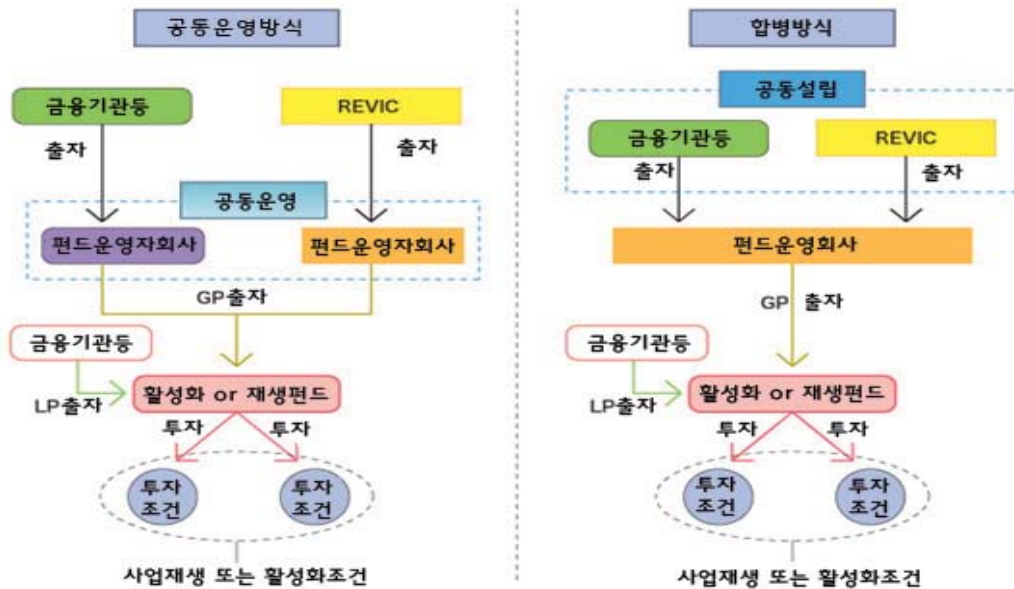
#### 2) 특정경영 관리업무(펀드 운영업무)

신 기구의 특정경영 관리업무, 즉 금융기관 등의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펀드의 운영 업무로, 사업재생을 도모하고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자금 요구, 인적자원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펀드 운영 자회사로서 REVIC(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캐피탈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신 기구가 특정경영관리를 할 때에는 특정경영관리를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신속하게 주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활성화법 제32조의5 제1항과 제2항).<sup>47)</sup>

또한 민간사업자와 펀드의 공동운영을 통하여, 기구의 특정 노하우를 금융기관 등에 이전하고, 금융기관 등의 지원능력의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각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의 충실을 기대할 수 있다.<sup>48)</sup> 실제의

47) 일본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 과제로는 인재확보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 판로/시장 개척, 신기술 연구개발, 후계자 육성, 신사업분야 진출, 사내 설비투자, 사업재구축, 경영조직 재편, 브랜드력 강화, 기업간 제휴 추진,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들 수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일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 「KB경영리포트」, 2013-06, 13쪽]; 우리나라의 지역 경영활동의 어려움도 일본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노사분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연호·연훈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 충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충북대학교, 2005, 20쪽].

펀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1.html>)

### 3) 특정출자 업무(사업재생 자회사 지원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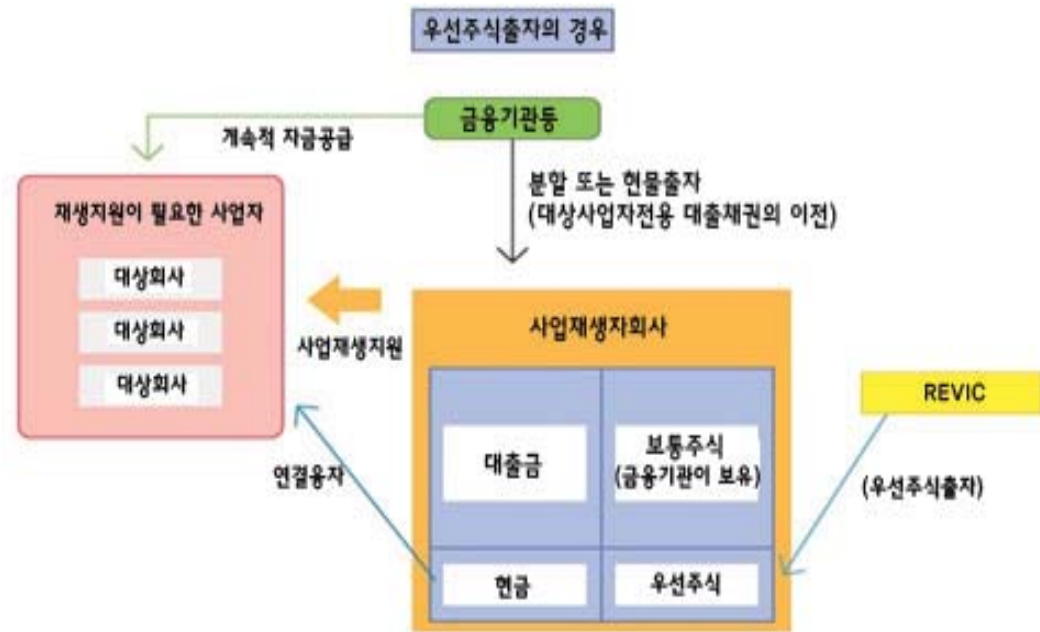
특정출자 업무는 금융기관 등이 설립한 사업재생 자회사<sup>49)</sup>에 대하여 신 기구가 출자 또는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 기구는 사업재생 자회사의 출자, 우선주식 또는 열후 론(loan)<sup>50)</sup> 등의 용자를 통하여 금융기관

48)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5.html>(2014. 11. 15)].

49) 금융기관 등이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이전을 받아 대금업자인 사업재생지원회사를 말한다.

50) 열후론은 변제 순위가 다른 채권보다 낮은, 무담보의 대출 채권을 말한다. 이것은, 차주(채무자)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경영파탄 또는 해산했을 때에, 원리금의 변제가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되는 금전 소비대차이며, 또 주식(무의결권 우선주)에 가까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자기자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한편, 채권자에게는 변제 순위가 통상의 채권보다 낮고, 만약 일시에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가 큰 반면, 금리는 통상의 채권보다 조금 비싸게 설정해 둔다. 일본에서는 열후론은 1990년경부터 해금되어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에서는 자기자본 규제비율 상의 자기자본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부터, 버블

등 용자처의 사업재생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의 사업재생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등이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면 사업재생 자회사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속적인 자금공급을 기대하게 된다(활성화법 제32조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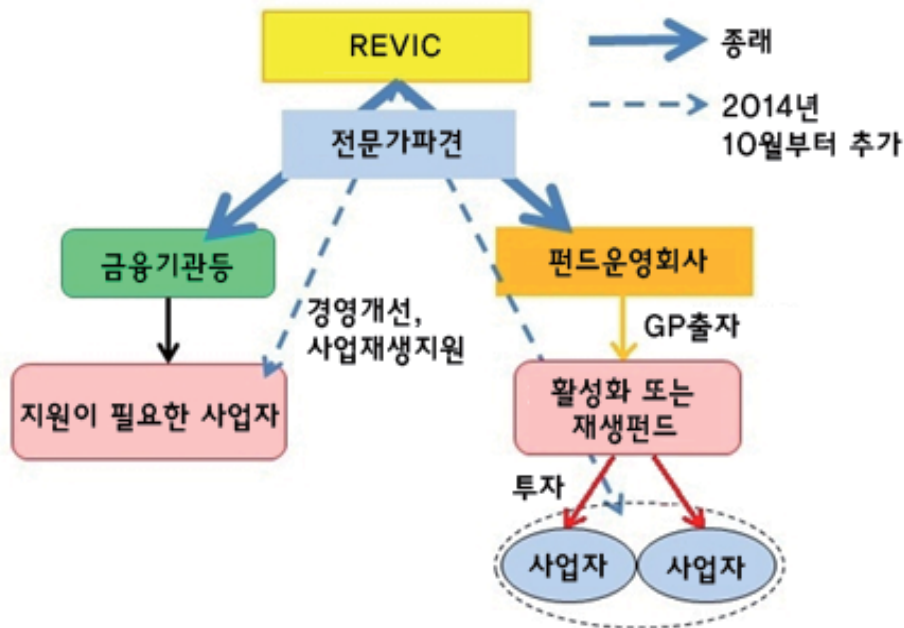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2.html>)

#### 4) 특정전문가 파견업무

특정전문가 파견업무는 지역에 있어서 사업재생·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활동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금융기관 등, 사업재생자회사 및 사업재생·지역활성화 펀드의 운영회사)에 대하여 사업재생 등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인재를 신 기구가 파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거래처 사업자의 성장성·수익성 등의 사업성 평가를 행하는 경우나 솔루션 안(案)의 책정을 행하는 경우의 조언 등을 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제도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신 기구가 특정전문가 파견을 행하는 금융기관/펀드 운영회사 등)의

붕괴 후의 경영난이 존재되는 경우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용되었다  
 [<http://www.ifinance.ne.jp/glossary/finance/fin162.html>(2014. 11. 15)].

지원, 자금제공 등을 행하던 사업에 대하여 신 기구가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업재생 등에 관련한 지원·조언 등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활성화법 제32조의 11).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3.html>)

#### 5) 특정신탁 인수업무

특정신탁 인수업무는 신 기구가 비주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등의 신탁재산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그 대상은 거래금융기관 등의 협력을 얻어서 지역에서 재건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자 등이다. 이 구조는 비주요 금융기관 등의 대출채권 등을 신 기구에 집약함으로써 각 채권자(주요 및 비주요) 상호 간에 조정을 할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주요 금융기관 등에 의한 집중적인 사업재생지원의 실시(예를 들면, 사업재생계획의 작성 등)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기구의 다른 업무(예를 들면, 중소기업자 등의 특정전문가 파견업무 등)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① 대상채권 범위의 확대(리스채권, 구상권 등의 추가), ② 참가자에 관련한 조건이(참가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만의 신탁이 가능) 완화로 인하여 향후 동 제도의 활용 여지가 크게 확대되었다(활성화법 제32조의 9).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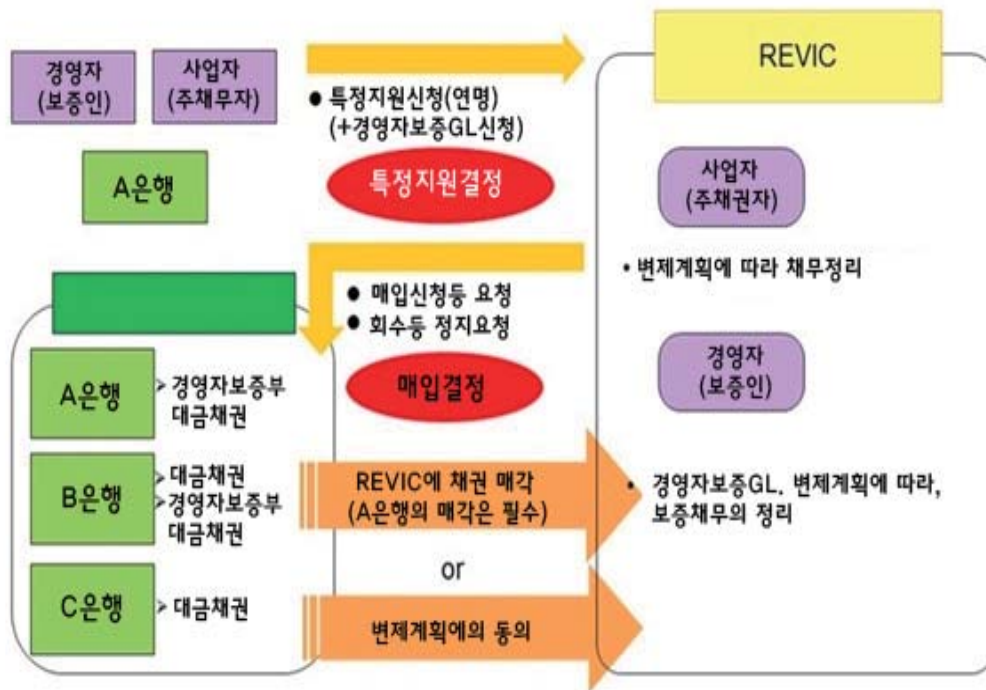
### 6) 특정지원업무

특정지원업무는 신 기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경영자보증을 한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고, 사업자(주채무자)의 채무정리를 하는 동시에, 경영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Guideline, GL)에 따른 정리 절차를 행하는 것이다. 본 업무의 목적은 보증채무의 존재가 방해되는 전·폐업 등이 곤란한 경영자를 지원하여 경영자의 재도전의 실현, 중소기업의 각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sup>51)</sup>에 있어서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 기구의 기존 업무인 사업재생 지원업무와의 차이점은 ① 사업자(주채무자), 경영자(보증인), 금융기관 등(주요가 아니어도 가능)의 3자가 연명하여 신청하게 된다는 점, ② 변제원자(辨濟原資)가 현존자산으로 되기 위한 자산 등의 사정(du

51) 인간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물학적·사회적으로 각각 특징지을 수 있는 여러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는 태아기, 영아기, 소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또는 성장기, 성숙기, 노쇠기 등으로 구분되고, 사회학적으로는 취학, 취직, 결혼, 아이들의 독립 등의 전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diligence)은 용이하게 처리된다는 점, ③ 적어도 금융기관이 1개 회사의 채권매입이 필요하다는 점, ④ 용자, 출자, 보증을 행하지 않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 기구에 있어서 사업재생 지원업무와 특정지원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제2회사 방식」을 이용한 사업재생계획을 책정한 경우에는 잔존채무에 관하여 신 기구에 의한 특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함에 의하여, 경영자를 기존의 사업에 관련한 보증채무를 벗어나게 하고 재도전의 의욕을 가진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활성화법 제 32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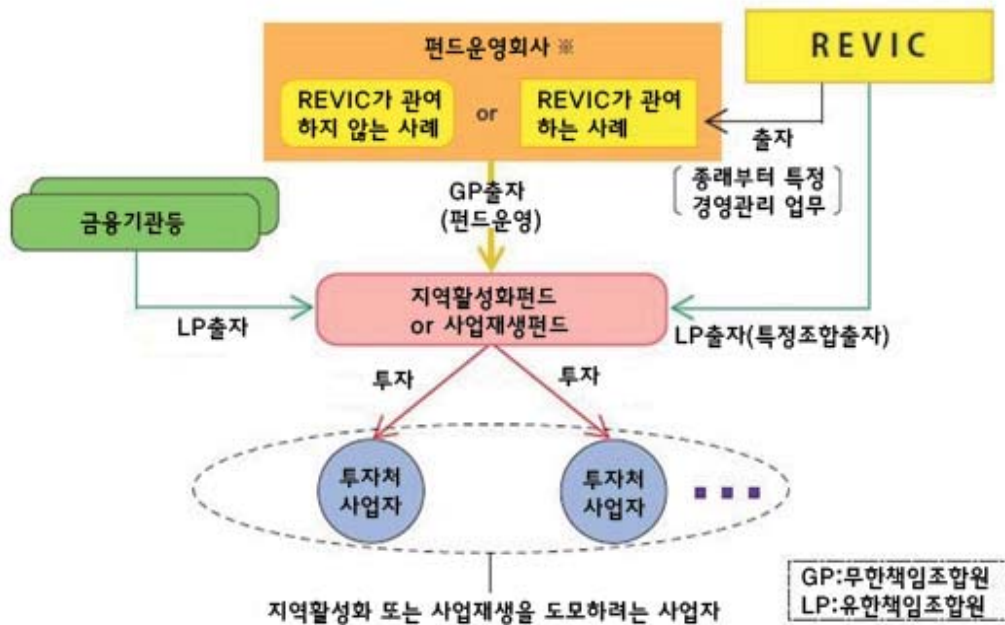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6.html>)

### 7) 특정조합 출자업무(펀드 출자업무)

특정조합 출자업무는 종래의 펀드 운영업무(특정경영 관리업무)와는 다른 기능으로서, 신 기구가 사업재생·지역활성화 펀드에 대한 출자를 하는 것이다. 다만, 신 기구에 의한 출자는 유한책임조합원(LP)로서 출자하는 것에 한하고, 그 한도액도 민간자금의 실마리가 되도록 펀드 총액의

1-2% 정도의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였다. 개별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펀드의 업무집행자로 되는 신 기구와 당해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유한책임조합원(LP)가 되는 지역금융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투자위원회(GP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관)의 옵서버(observer)로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sup>52)</sup> 신 기구의 출자 계기는 민간에 의한 리스크 머니(risk money)의 공급, 사업재생·지역활성화 펀드의 조성 촉진과 지역의 사업재생·지역활성화 지원의 담당자인 지역금융기관 등의 지원능력의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활성화법 제32조의 12).<sup>53)</sup>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7.html>)

#### 4. 소 결

이상으로 일본의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기구를

52) <http://www.cas.go.jp/jp/seisaku/fund/dai1/siryou4.pdf>(2014. 11. 15).

53) 펀드운영회사에 대해서는 기구가 관여하는 사례(중래 기구의 특정경영관리업무)와 기구가 전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민간의 펀드 운영회사만의 사례가 있다.

덤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도 과거 한 때에는 사업재생이라는 관점에서만 지원을 하였으나, 그러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 기구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한 검토가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도입에 매우 유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IV.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도입에 대한 검토

#####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도입 필요

2014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과거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의 추진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검토를 주장하였다.<sup>54)</sup> 이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지역개발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법인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단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시도경제협의회는 공적 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권활성화재단도 특정한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본의 지원기구와는 달리 단지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의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는 고용의 기회의 확대, 지역의

5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지역 주도 발전전략 및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방안 -”, 2014. 3. 12 참조.

총체적 경제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신용질서의 기반 강화라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기타 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 등이 가진 채무권의 매수 기타 업무를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재생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동 기구의 지원 대상 사업자 등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개발기구 등의 그 대상을 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지원 대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일본의 경우 대규모 사업자, 위에서 언급하였던 지방 3공사, 제3분야의 사업자가 제외된 반면, 기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병원 등도 포함된 모든 업종의 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회사의 형태도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지분회사,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등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하는 범위보다는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상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에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고 대기업이 아니라면 사업의 유형 및 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그 적용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지원대상의 업무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법인 등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업무 영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지역개발법인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소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기업지원 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자금, 협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투융자 복합금융지원사업, 소공인 특화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의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의 재생 업무, 특정경영관리업무, 특정신탁인수업무, 특정 출·용자 업무,<sup>55)</sup> 특정 전문가 파견 업무, 특정조합출자업무 등으로 세분화 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지원 제도와는 별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를 두어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지원의 방법으로 펀드의 운용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펀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연기금 등 민간 부분이 4천억원을 출자하고 정부가 2천억원을 보탠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된 미래창조펀드,<sup>56)</sup> 민간기업의 중소기업청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R&D지원 협력펀드<sup>57)</sup>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지원 펀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REVIC 캐피탈 주식회사라는 펀드 운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운용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REVIC는 금융기관 등과 함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써 출자도 하여 지역활성화 펀드 또는 사업재생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업재생 및 지역활성화 관련 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5)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이 있다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venture11.jsp>(2014. 11. 15)].

56) <http://koreablog.korea.kr/16>(2014. 11. 15)7.

57)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2014. 11. 15).

## V. 맺는 말

이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지원기구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이러한 지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법」을 제정하였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재생업무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활성화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향후 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 주도적 역할로부터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도적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 같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일본과 우리의 경제 제도 및 사회적 이념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된 제도를 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국토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의 설립과 추진방안”, 「국토정책」 제131호, 2007. 3. 12.
- 권성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일반대학원, 200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지역 주도 발전전략 및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방안 -”, 2014. 3. 12.
- 나채준,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13.
- 법제처,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 법제연구원, 2009. 9. 30.
- 송영필,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5. 4. 1.
- 이광시,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대학원, 2002.
- 이연호·연훈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충북대학교, 2005.
- 조유리·김정언·공영일·진홍윤·허유민,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11.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일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 「KB경영리포트」, 2013-06.
- 經濟産業委員會調査室 柿沼 重志·中西 信介, “産業競争力強化法案の概要と主な論点”, 「經濟のプリズム」 No. 120, 2013.11.
- 內閣府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擔當室, “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について”, <http://www5.cao.go.jp/revic/index.html>(2013. 5).
- 上村未緒, “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 「みずほ研究所政策調査部」, 2013. 5.
- 小野 伸一, “事業再生を考える - 過去の事例から-”, 「經濟のプリズム」 No. 85, 參議院調査室資料, 2010. 11.
- 47NEWS “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が發足 中小企業の再生担う 『共同通信』 (2013. 3. 18)”, <http://www.47news.jp/CN/201303/CN2013031801001199.html>(2014. 11. 15)



Jeffrey M. Weiner Partner/Steptoe & Johnson LLP, *Business Du Diligence Strategies 2010 ed.*, Thomson Reuters/Aspatore, 2010, p. 6.

Joseph E. Aldy, "A Preliminary Review of 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s Clean Energy Package", *the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Harvard Kennedy School, Dec. 2011.

Sarah K. Bryant and Spiros H. Martzoukos, "the Impac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n the Value of S&L Stocks",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22. Number 2-3, Summer/Fall 1998.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Description of the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Jan 30, 2008.

<http://law.e-gov.go.jp/htmldata/H21/H21HO063.html>(2014. 11. 15)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2014. 11. 15)

<http://www5.cao.go.jp/revic/pdf/gaiyou1.pdf>(2014. 11. 15)

<http://www.cas.go.jp/jp/seisaku/fund/dai1/siryu4.pdf>(2014. 11. 14)

<http://www.chiikinogennki.soumu.go.jp/chiiki/files/4.pdf>(2014. 11. 15)

[http://www.google.co.kr/url?url=http://council.changwon.go.kr/council\\_standing/active/do](http://www.google.co.kr/url?url=http://council.changwon.go.kr/council_standing/active/do)

[wn.php%3Fbill\\_no%3D618%26nox%3D1&rct=j&frm=1&q=&esrc=s&sa=U&ei=xnxhVMnwNcHA](http://www.php%3Fbill_no%3D618%26nox%3D1&rct=j&frm=1&q=&esrc=s&sa=U&ei=xnxhVMnwNcHA)

[mAXZjICoBw&ved=0CBMQFjAA&usg=AFQjCNFvMou8VHz3GRCibRld24BkTgxB\\_w](http://www.maxzjicoBW&ved=0CBMQFjAA&usg=AFQjCNFvMou8VHz3GRCibRld24BkTgxB_w)(2014. 11. 11)

<http://www.ifinance.ne.jp/glossary/finance/fin162.html>(2014. 11. 15)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6506#0000>(2014. 11. 11)

<http://www.mcci.jp/saisei.pdf>(2014. 11. 15)

<http://www.moj.go.jp/content/000108997.pdf>(2014. 11. 15)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40724101810132.pdf](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40724101810132.pdf)(2014. 11. 10)

<http://www.revic.co.jp/business/merit.html>(2014. 11. 15)

<http://www.revic.co.jp/business/specific5.html>(2014. 11. 15)

<http://www.revic.co.jp/business/target.html>(2014. 11. 15)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venture11.jsp>(2014. 11. 15)

<http://www.turnaround.jp/adr/guidebook.pdf>(2014. 11. 15)

### <국문초록>

새로이 출범한 현재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점, ② 최근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③ 과다한 가계부채, 낙후된 서비스 산업 등이 ‘눈앞의 문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④ 현 상황 지속시 우리 경제는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의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방향 제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법(株式會社地域經濟活性化支援機構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존재하는지, 유사 기구가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선 방안 내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역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조, 다만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수활성화, 지역개발법인, 사업재생 지원, 특정경영 관리업무, 펀드 운영업무, 특정출자업무, 특정전문가파견업무

## A legal Study on the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REVIC)

Koh Jae-Jong\*

At July 24, 2014, 'New economy team' announced the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y. In this policy, New economy team pointed at the next several issues relat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country. Firstly, we may not convinced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grows consistently. Secondly, bad condition of our economy may be come from structural and complicated problems. Thirdly, it may be actualize, as the problems of the front of the eye, to have the excess household debt of household and to have falling behind service industry etc.

As the such result, the new economy team suggested on the growth of domestic demand, the stability of livelihoods of people and innovation of economy a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related on the present situations

And I considered that stability of livelihoods of people proposed a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have been closely related on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lso, I considered that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is to consolidate the footing on permanent resident as giving regional inhabitant the chance of job and income by means of the growth on regional productivity.

I think that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the self-governing body must collect the information and data, form the scheme, generate the several system and strengthen the administration ability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supporting institution for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s the methods, I will study on our system with comparison with the japan system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s the result, I suggest that we introduce the japan's institution into our

---

\* Professor, dept. of law, Sunmoon Univ.

country. Bu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economic system and the scientific ideas between our country and the japan, we must pay special attentions to one's choice of japan's system.

**Key Words** : the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REVIC),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New economy team, innovation of economy, economic system and the scientific ideas etc.